

서울고등법원 2024. 7. 19 선고 2024나2013867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4. 7. 19 선고 2024나201386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1 선고 2023가합58693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운영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현

담당변호사 박정은

변론종결 2024. 6. 14.

판결선고 2024. 7. 19.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1. 선고 2023가합5869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가.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A’이라 한다) 사이에 2022. 4. 2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및 2022. 11. 16. 체결된
대물변제계약(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이라 한다)을 각 취소하고,
나. 피고는 A에게 인천지방법원 2022. 4. 29. 접수 제14768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의, 같은 법원 2022. 11. 17. 접수 제38553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의 개요

가. 원고는 A의 신용보증의뢰에 따라 A과, ① 2015. 11. 30. 신용보증원금 339,150,000원,
보증기한 2016. 11. 30.까지(그 후 2022. 11. 25.까지 연장)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② 2021. 3.
8. 신용보증원금 80,750,000원, 보증기한 2022. 3. 8.까지(그 후 2023. 3. 8.까지 연장)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③ 2022. 4. 13. 신용보증원금 80,000,000원, 보증기한 2023. 4. 13.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위 각 보증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이 사건
각 보증약정에 따라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이 사건 각 보증약정서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A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결정 또는 경매신청이 있는 때에는 원고는 사전통지나 독촉 없이
사전구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부천세무서장은 A의 지방세 등의 체납을 이유로 2021. 3.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다.

나. A은 2022. 4. 28. 피고와, 채무자 A, 채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으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22. 4. 2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아가 A은 2022. 11. 16. 피고와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고, 2022. 11. 1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각 보증약정에 따라 A을 대신하여 2023. 4. 10. 중소기업은행에 348,522,582원을, 2023. 4. 12. C은행에 82,444,598원을, 2023. 4. 12. D은행에 82,104,243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2023. 4. 1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대물변제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라. 제1심법원은 2024. 2. 1. “원고의 대위변제에 따른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 한다)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대물변제계약 이후에 발생하였으나,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위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구상금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한편 A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전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악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피고는 제1심판결에 항소하였는데, 이 법원에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대물변제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는 A의 채무초과 사실을 알지 못하여 선의이다.”라는 기존의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1심법원에서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으로 이 사건 구상금 채권만을 주장하다가 이 법원에서는 원고의 A에 대한 사전구상금 채권도 함께 주장하고 있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제1심에서 조사된 증거들과 이 법원의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대물변제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어 깨지지 않았다는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고 아래 다.항 기재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이 법원에서 고쳐쓰는 부분

■ 제1심판결서 제3쪽 제6행의 “제1신용보증”을 “제1신용보증약정”으로, 제8행 “제2보증약정”을 “제2신용보증약정”으로, 제9행의 “제3보증약정”을 “제3신용보증약정”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서 제3쪽 제14행의 “100,000,0000원”을 “100,000,000원”으로 고친다.

다.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서 제10쪽 제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다) 나아가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전구상금 채권도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된다.

(1) 이 사건 각 보증약정서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A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결정 또는 경매신청이 있는 때에는 원고는 사전통지나 독촉 없이 사전구상할 수 있다’고 정한 사실,

부천세무서장이 A의 지방세 등의 체납을 이유로 2021. 3.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2)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천세무서장의 압류등기가 마쳐진 2021. 3. 5.에 A에 대한 사전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고, 그 시점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대물변제계약이 체결된 각 2022. 4. 28., 2022. 11. 16.보다 앞서므로, 위 사전구상금 채권 역시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2021. 3. 5. 자로 부천세무서장의 압류등기가

마쳐지기는 하였으나 그 사실 자체가 A의 신용사정 악화를 대변하지는 않으므로 원고에게 사전구상권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각 보증약정서 제5조 제1항 제2호는 주채무자가 경제적 신용을 잃었다고 볼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고로 하여금 그 사유만으로 미리 구상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이고, 원고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구체적인 신용사정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서승렬, 판사 박연욱, 판사 함상훈

별지